2-2-1. 대학원 학칙

제1장 총 칙

(신설 1996.12.31)

제1조 (목적)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가톨릭 정신에 따라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한층 더 심오하게 연구하여 지도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정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'석사학위 과정'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조 (학과 및 입학정원)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한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신학과에 2개 이상의 전공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단일 전공을 둘 수 있다.

제2장 입 학

제4조 (입학시기) 입학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.

제5조 (지원자격)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 할 수 있는 자는 국내·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. <개정 2015.9.1>

1. (삭제)<개정 2015.9.1.>
2. (삭제)<개정 2015.9.1.>

②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학기간은 휴직하고 입학할 수 있다.<개정 2021.9.1.>

제6조 (입학전형)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전형을 행한다.<개정 2014.3.28., 2014.10.31.>

1. 전적대학 성적 및 1종의 외국어에 대한 필기시험.<개정 2014.3.28., 2014.10.31.>
2. (삭제)<개정 2014.3.28.>
3. (삭제)<개정 2014.3.28.>

제6조의 2 (입학시험 특별규정) <본조신설 2007.12.1.> (삭제)<2014.3.28.>

제7조 (석사학위 과정 지원절차) 석사학위과정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3.28., 2014.10.31., 20219.1.>

1. 입학지원서(대학원 소정양식)
2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
3. 출신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8조 (재입학) 대학원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퇴학 또는 제적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군복무로 인한 재입학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 (재입학 학생에 대한 학점처리)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심의한다.

제10조 (전공 분야 과목 이수)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 분야가 대학에서 이수 한 것과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.

제3장 수업 연한, 재학 연한, 교육과정 및 성적

제11조 (수업 연한)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,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한다. 다만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.<개정 2010.11.1.>

제12조 (수업일수) 대학원의 수업 일수는 매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<개정 2007.12.1.>

제13조 (교육과정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내규로 정한다.

제14조 (수료학점)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제10조의 타전공 입학자가 이수해야 할 선택 과목은 별도로 추가된다.<개정 2010.11.1.>

제15조 (학점취득) 학생은 매학기 17학점을 초과하여 교과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<개정 2014.3.28.>

제16조 (학점이전) 대학원에서 인정한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때에는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7조 (학업성적)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.

등 급	점 수	평 점	등 급	점 수	평 점
A+	95 - 100	4.5	C+	75 - 79	2.5
A	90 - 94	4.0	C	70 - 74	2.0
B+	85 - 89	3.5	D	0 - 69	0
B	80 - 84	3.0			

② 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 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. 다만 수업 총시간 2/3 이상의 출석강의를 받지 않으면 시험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.<개정 2021.9.1.>

③ 교과목별 성적이 D급일 경우 재시험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재시험 결과 D급 이하를 받았을 때에는 낙제로 처리된다.<항신설 2007.12.1.>

제17조의 2 (학사경고)<본조신설 2007.12.1.> ① 매 학기말 성적 심의 결과 D급인 과목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.<개정 2021.9.1.>

②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할 수 있다

제17조의 2 (유급) <본조신설 2007.12.1.> 학년말 성적 평가 결과 취득한 학점계가 그 학년에서 취득해야할 학점 총계의 2/3에 미달하였거나 평균 2.0(70점)미만을 받은 자 혹은 2과목 이상

을 D학점 받은 자는 유급된다.<개정 2021.9.1.>

제18조 (이수학점 및 수료인정) ① 학점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.

② 수료인정에 있어서는 취득한 과목의 성적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학사학위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내에서 취득을 인정한다. 다만, 취득 학점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.

제4장 학위 논문 및 학위수여

제19조 (학위논문 제출) ① 대학원에서 제13조에 의한 각 과정 수료를 위한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개정 2010.3.1.>

② 학위 수여 및 학위 청구 논문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20조 (학위 수여)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,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(1)에 따라 신학석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<개정 2021.9.1.>

제21조 (수료증서) 각 과정의 수료 인정을 매학기말로 하며, 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(2)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.

제5장 등록, 휴학, 퇴학, 복학 및 제적

제22조 (등록) 학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내에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
제23조 (휴학)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1/3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3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소속 교구장 및 수도원장이 인정하는 수련기간과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 (복학)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 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(질병으로 인한 휴학 후 복학시는 진단서 첨부함)

제25조 (퇴학)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 (제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<개정 2021.9.1.>

1.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
2. 휴학기간 경과후 신학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은 자
3. 본 대학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자
4.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
제27조 (징계)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보고에 의하여

총장이 이를 징계 할 수 있다.<개정 2021.9.1.>

제6장 공개강좌, 연구생, 외국인 학생

제28조 (공개강좌의 설치) ①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 공개강좌는 직무,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9.1.>

② 공개강좌 과목에 관한 사항등은 개강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.

제29조 (연구생) ① 대학 졸업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석사학위 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수강할 수 있다.

② 연구생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서식(3)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.

제30조 (외국인 학생) ① 대학원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하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.

제31조 (수강 및 입학허가시기) 연구생의 수강허가 및 외국인 입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<개정 2021.9.1.>

제7장 직제와 대학원 위원회

제32조 (조직)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외에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.

② 제①항의 교원중 적어도 2인을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.

제33조 (주임교수) ① 제32조의 교원중에서 각 전공마다 주임교수를 둔다.

②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34조 (대학원 위원회의 구성) ① 대학원에 대학원 위원회를 둔다.

② 대학원 위원회는 대학원장 외에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<개정 2021.9.1.>

제35조 (대학원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36조 (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, 진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
2. 학과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9.1.>
3. 교과과정 설치와 폐지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9.1.>
4.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6.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<개정

2021.9.1.>

7.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

8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7조 (대학원위원회의 소집과 의결방법)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1.9.1.>

제8장 보 칙

제38조 (준용규정)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① 이 학칙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학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③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① 이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수업연한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학칙개정 전에 2년의 수업연한의 적용은 받는 학생 중 제11조의 개정으로 신규 적용을 받아 개편되는 자는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학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① 이 학칙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학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.

③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④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 별표 1 >

학과 / 구분	수업방법	입학정원
신학과	주 간	30 명

< 별지 제1호 서식 >

석 제 호

학 위 증 서

성 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,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며,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신학석사학위를 수여 합니다.

논문 제목 :

년 월 일

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

대전가톨릭대학교 총 장

학위등록번호 : 대가대 (석)

< 별지 제2호 서식 >

연구 제 호

수 료 증 서

성 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과정에서

년 월간 전공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

본 증서를 수여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

대전가톨릭대학교 총 장

< 별지 제3호 서식 >

연구 제 호

연구실적증명서

성 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년 월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대전가톨릭대학 대학원장